

결정 사항

1. 피고는

가.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, 피고의 뉴스1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5-1 및 별지 5-2 각 기사의 본문 마지막에 이어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도문을 위 각 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크기로 게재하여, 위 각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되어 나타나도록 하고,

나. 전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.

2.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3.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2024. 12. 20.

재판장 판사 문광섭



 판사 최성보



 판사 이준현



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보 도 문

(조정)

[알려드립니다]

위 기사와 관련하여 이혁진은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발생한 것이고 오히려 자신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펀드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.

열람용